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동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951

발의연월일: 2022. 10. 27.

발 의 자:정동만·김희곤·황보승희

전봉민 · 김도읍 · 안병길

이주환 · 서병수 · 이헌승

조경태·백종헌·하태경

김미애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특별법은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「공항시설법」 일부 규정 준용으로 인해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토지·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(사업인정 고시)은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경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,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해 사업인정(사업인정 고시)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토지·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8항 및 제9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2항 중 "제9조부터 제22조까지"를 "제9조부터 제11조까지, 제1 3조부터 제22조까지"로 한다.

제8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국토교통부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고시할 때에 수용 및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토지등의 수용)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토지·물건 또는 권리(이하 "토지등"이라한다)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.

②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과 이에 관한 고시가 있을 때(제8조제8항에 따라 수용 및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기본계 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)에는 「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.

- ③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(裁決)의 신청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3조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.
- ④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.
- ⑤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②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는「공항시설법」제9조부터 제 -----제9조부터 제 22조까지, 제24조, 제54조제1항 11조까지, 제13조부터 제22조까 및 제56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공항개발사업"은 "신공항건설 사업"으로, "공항ㆍ비행장개발 예정지역"은 "신공항건설예정 지역"으로 본다. 제8조(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제8조(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) ① ~ ⑦ (생 기본계획의 수립) ① ~ ⑦ (현 략) 행과 같음) <신 설>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가덕도신 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고시 할 때에 수용 및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토지등의 소 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

<u><신 설></u>

알려야 한다.

제9조의2(토지등의 수용) ① 사업 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에 따른 토지·물건 또는 권리 (이하 "토지등"이라 한다)를 수 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.

②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과 이에 관한 고시가 있을 때(제8조제8항에 따라 수용 및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 를 말한다)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 로 본다.

③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(裁決)의 신청은 「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3조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

기본계획 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.

④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 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.

⑤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「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 한다.